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7.(월)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 8

3. 대구광역시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

4. 달천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5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 현풍읍 관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읍청사 주변 주차공간 확장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읍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읍청사 인근 도로 통행을 원활케 하여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

-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을 줄이고 도로통행 원활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가결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나, 당초 사업대상지 선정 당시 가감정가를 크게 상회하는 매매가를 요구하여 제외되었던 매곡리 263-1번지 토지 소유주가 현 사업대상지(매곡리263-6)의 매매가 수준에서 매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추가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이에 당초 계획대로 매곡리 263-1번지 외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규모(A=994㎡, 33면)보다 확장된 규모(A=1,828㎡, 54면)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안

- 구지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업 입주가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및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할 생활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 사 업 명 :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 위　　치 : 현풍읍 부리 374번지 일원
- 면　　적 : 부지면적 1,171㎡
- 사업기간 : 2026. 7. ~ 2026. 12.
- 주요시설 : 주차장 1개소
- 사 업 비 : 22억 원 (부지매입비)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646,525,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514,100,0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6. 7. : 대상지 현장조사 및 부지선정

· 2026. 8.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완료

· 2026. 9. : 추가경정예산 수립

· 2026. 10. : 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제3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변경(확장)**	비고
사 업 명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사 매곡리 263-6번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 치	· 매곡리 263-6	**· 매곡리 263-6 외 5필지**	· 추가 필지 *매곡리 263-1 (690㎡, 대) *매곡리 197-13(42㎡, 구) *매곡리 298-2 (29㎡, 도) *매곡리 197-7 (49㎡, 구) *매곡리 298 (24㎡, 도)
면 적	994㎡(≒301평)	**1,828㎡(≒553평)**	증 834㎡(≒252평)
주차면수	33면	**54면**	증 21면
총사업비	34.5억원	**55.5억원**	증 21억원

- 사 업 명 : 다사 매곡리 263-6번지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2027. 8.
- 주요시설 : 노외주차장 1개소 (주차면수 54면)
- 총사업비 : **55.5억 원**
 - 부지매입비 45.4억, 공사비 9.7억, 용역비 0.4억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103,072,000원

-건물(시가표준액) : 19,492,56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3. ~ 4. : 읍·면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2025. 7. : 사업대상지 선정

· 2026. 1. ~ 3. : 경계측량,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 2026. 2. ~ 5. : 실시설계 용역,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용역

· 2026. 6. ~ 7. : 폐석면 철거공사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용역

· 2026. 8. ~ 10. : 경계측량,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 2026. 11. ~ 12. : 지정폐기물(폐석면) 조사 및 철거공사

· 2027. 1. ~ 2. : 해체계획서작성 용역 및 건축물 철거공사

· 2027. 3. ~ 4.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 2027. 5. ~ 8. : 착공 및 준공

❍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 사 업 명 :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 위 치 : 구지면 응암리 1234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7,926.2㎡, 연면적 4,125㎡(2개 동, 지하 1층~지상 2층)
- 사업기간 : 2026. 1. ~ 2029. 6.
- 주요시설

·다목적체육관 동

층 수	면적(㎡)	주요시설
2층	1,080	다목적 체육관, 스크린 파크골프, 운동처방실, 물품보관실 등
1층	740	헬스장, GX룸 등
지하 1층	168	기계설비, 전기설비
총 계	**1,988**	

·수영장 동

층 수	면적(㎡)	주요시설
1층	1,748	수영장(25m×5레인), 유아풀, 샤워실, 탈의실, 강사실 등
지하 1층	389	수영장 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총 계	**2,137**	

- 총사업비 : **318.7억 원**

 · 부지매입비 28.5억, 공사비 227.1억, 용역비 32억, 운영설비비 1.7억, 예비비 29.4억

 ※ 25.12.16. 달성군-LH간 토지매입 협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토지{조성원가(294,736원) × 면적(7,926.2㎡) + 법정이자(516,190,157원)} : 2,852,330,000원

※기준가격(대장가격)

-토지(공시지가 × 면적) : 12,198,421,800원

-건물(사업비) : 29,020,000,000원

-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 12. : 토지매입 협약(달성군-LH)

· 2026. 3. ~ 6. : 공공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026. 4. : 사업계획 수립

· 2026. 4. ~ 7. : 市 지방재정투자심사

· 2026. 8. : 건축공간연구원(Auri) 사전검토

· 2026. 9. : 공공건축심의

· 2026. 12. : 토지 매입

· 2027. 1. ~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8. 4. : 공사 착공

· 2029. 6. : 공사 준공

· 2029. 7. : 개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현풍읍 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총 3건입니다.

○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건은 현풍읍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부족한 읍청사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풍읍 부리 374번지 일원의 토지 7필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여 1,171㎡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2억 원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매입에 큰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과정에서 적정한 취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진·출입 동선과 보행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다음으로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은 기존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당초 994㎡, 33면 규모의 주차장을 1,828㎡, 54면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34억 5천만 원에서 55억 5천만 원으로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추가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사업비 대비 주차공간 확충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석면 처리 과정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입주와 정주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지면 응암리 1234번지에 부지면적 7,926.2㎡, 연면적 4,125㎡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18억 7천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수영장 등은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관리비가 소요되는 만큼 예상 이용수요와 운영방안, 향후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 사업별 공공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업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별 수요와 규모의 적정성, 부지 취득가격 및 향후 운영·관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과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6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3의 개정(본조신설 2026. 3. 17, 시행일 2026. 9. 18)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조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를 폐지함.

4. 상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규정이 법률상 금지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반 상태를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개발 행위허가 심사기준을 정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67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중인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현 수탁기관인 (사)정인장애인복지회와의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비고
달성군청내 카페 딜라이트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2층)	18.04㎡	6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장애인	비장애인 (바리스타)
인 원	6	5	1

라. 위탁기간: 3년(2026.12.30. ~ 2029.12.29.)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바. 민간위탁 재계약 경위

○ 2026. 8. 11. :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접수

※ 신청기관 : 사단법인 정인장애인복지회

○ 2026. 8. 14.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재계약 적정 판단)

※ 심의 결과(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총점 541점, 평균 90.1점 재계약 의결

○ 향후일정

- 2026. 9. : 의회 동의

- 2026. 10. : 협약체결(위탁기간 : 2026.12.30.～ 2029.12.29.)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정인장애인복지회와의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카페(딜라이트)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현재 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바리스타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훈련 참여자의 근로장애인 채용, 카페 운영 활성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평균 90.1점으로 적정 기준인 70점을 상회 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성, 운영경험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그동안 지도·감독 과정에서 물품관리, 범죄경력 점검 및 예산편성 절차 등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제출자료상 모두 조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도 종사자 관리와 예산·회계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적으로 현 수탁기관의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 전문성과 운영성과, 성과평가 및 심의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68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수탁기관	비 고
달천예술 창작공간	다사읍 달천리 306-1	부지면적 : 6,741.33㎡ 건축면적 : 484.26㎡ 연면적 : 841.46㎡	(재)달성문화재단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시설물, 장비, 물품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3년(2026. 11. 10. ~ 2029. 11. 9.)

○ 수탁기관 선정방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성과평가 결과: 적정(평균 87.5점)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9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달성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단체, 예술가,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사업의 저변 확대에도 큰 강점이 있습니다.

○ 또한, 재단이 수행하는 지역축제, 문화교육, 예술인 지원사업 등과 달천예술창작공간을 연계할 경우 개별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달성군 전체 문화예술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작공간의 관리·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우선 위탁[1]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성과평과 결과 평균 87.5점으로 위탁성과도 적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보다는 입주기간 동안 지속적인 주민 대상 예술교육,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 창작활동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만족도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하여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문화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창작공간을 문화·예술적으로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작공간 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69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기념품 제공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명칭을 변경
(안 제2조제5호, 제4조제4호, 제13조제4호,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정의 및 등록 기준 조항을 삭제
(안 제2조제9호, 제35조)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
(안 제5조의2)

○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표식 발급 규정을 정비
(안 제19조제1항)

○ 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을 삭제
(안 제25조)

○ 기타 오탈자 및 미비 사항 정비
(안 제4조, 제18조제2항, 제41조제2항)

4.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공직선거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해설사 관련 명칭과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5호 등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관광해설사”라는 명칭만으로도 업무의 성격과 역할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관광객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해설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 제2조제9호, 제35조를 삭제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정의 및 등록 기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한 것은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특히 지역상품권, 관광서비스·체험의 제공은 등 관광객의 지역 체류·소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의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19조제1항은 관광해설사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에서 “발급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광해설사는 직무 수행 시 표식을 소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두 조항 간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현행 제25조는 셔틀버스를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2]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환경의 변화와 관광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특히 관광기념품·홍보물품 뿐만 아니라 지역상품권, 관광서비스·체험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관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70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화원유원지 관련 미운행 시설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내용 삭제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행하지 않는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실제 시설의 운영 현황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의2 제2항, 안 제8조제2항, 별표1 중 제2호의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